

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

제정 1989년 1월 1일 조례 제 21호
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50호
(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
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1년 2월 21일 조례 제1138호
(제명개정 포함)
일부개정 2020년 11월 6일 조례 제184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회계법」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1. 15, 2020. 11. 6>

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1. 2. 21, 2020. 11. 6>

1. 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
2.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제3조(재정보증)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

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위의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.

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11. 6>

1. 재무관 :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
2. 제1호에 따른 경리관을 제외한 회계관계공무원 :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

[전문개정 2011. 2. 21]
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. 15, 2020. 11. 6>

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. 15 조례 제95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2. 21 조례 제113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1. 6 조례 제184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